



간 질 환 에 대 한 업 무 상 질 병 인 정 기 준

가톨릭 의대 성가병원 소화기 내과 이영석

업무상 간질환의 종류

일반적으로 간질환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바이러스성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약제에 의한 간염, 독성물질에 의한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사고, 재해에 의한 간 손상, 세균성 간염, 기생충, 원충류에 의한 간질환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는 특발성 간염(Cryptogenic hepatitis)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간질환은 직장인에게도 발생될 수가 있고 또 만성 간질환이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더욱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간질환은 크게 1) 건강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어 간질환이 발생된 경우와 2) 기존의 간질환 환자가 업무와 관련되어 자신의 간질환 자체가 악화된 경우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업무에 관련된 간질환의 발생과 이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나 성격, 또한 근무환경이나 작업조건에 따라 앞에서 언급한 모든 간질환은 발생될 수가 있다. 간질환의 발생유형에 따라 업무상 간질환은 크게 사고로 인한 간질환과 직업병 성격의 간질환으로 구분된다. 작업장에서 교통사고, 추락, 폭발, 파편, 관통상 등으로 간이 직접적으로 손상 받는 사고성 간질환은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가 쉽다. 작업환경에서 취급하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해 간질환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직업병 성격을 띠고 있다. 간독성 화학물질들은 그 종류가 무수히 많고 나타나는 간질환의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최소 피폭량이나 최단 피폭기간이 나라마다 달라 외국의 자료를 참조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다. 염화비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최소 피폭량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유럽에서는 >50 ppm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간혈관육종이나 간섬유화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피폭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간섬유화 2년 이상, 혈관육아종은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로 세분하고 있다. 무수히 많은 간독성 화학물질 중 판정기준이 정해진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1. 간독성 화학물질과 간질환에서 업무연관성에 대한 법적 판단

직장생활 도중 발생되는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간질환과 업무수행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질병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 발생기전과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뚜렷이 규명된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질과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98두4740).



2. 업무와 관련된 바이러스성 간염의 발생

최근 자연과학, 분자생물학, 의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간염바이러스의 실체가 많이 밝혀졌다. 간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간질환과는 달리 바이러스성 간질환은 그 전염경로가 밝혀지고 진단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임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업무연관성은 비교적 쉽게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성 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A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인 영아원, 보육원, 고아원,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환경요원, 하수처리요원들에게는 A형 간염 자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혈액이나 혈액폐기물을 취급하는 직종인 의료인, 의료종사자, 환경요원들에게는 B형 간염, C형 간염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염경로 확인방법

A형 간염 1) 직장 내에서 A형 간염 환자의 발생 2) 환자의 배설물 취급행위 3) 배설물, 오수, 폐수의 처리 4)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

B형 간염, C형 간염 1)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이나 수술 칼, 뾰족한 물건에 찔렸을 때 2)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구강점막이나 안구에 튀었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에 노출되었을 때

간질환의 악화 요인

기존의 간질환이 업무와 관련되어 악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간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자연경과, 악화요인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만성간염이란 간조직 내에서 염증반응이 6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 기능을 지닌 간세포의 수효가 감소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가 오랜 기간동안 진행됨에 따라 간경변증이 발생되고 있다. 간경변증 상태에서는 비정상적인 간세포가 발생되기 쉬운 상태로서 암세포가 발생되면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간암이 발생되고 있다. 기존의 간질환 상태에서 간세포의 재생과정을 억제하는 요인 뿐 아니라 간세포가 더 이상 파괴, 손상되는 모든 요인들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약,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의 오남용으로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며 유해 음식물이나 첨가물, 녹즙 등과 같이 자연에 존재하는 간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세균의 독소, 곤충이나 벌레의 독소에 노출되는 경우 뿐 아니라 주거환경에 존재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간질환은 악화될 수가 있다. 또한 다른(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되는 경우, 세균, 진균, 원충류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간질환은 악화되며 음주나 다른 질병상태에서도 간질환은 악화될 수가 있다.

만성 간질환이란 간염이 오랜 기간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는 진행될 가능성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간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 자신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신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직장생활에 따른 증상으로 간과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다. 양약이나, 한약, 민간약, 건강식품, 녹즙 등 겸증되지 않은 물질을 복용함에 따라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간질환은 그 원인이 다양하며 한가지 질환도 임상 경과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검사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질환 환자들은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간질환의 자연경과를 이해하고 악화요인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 간질환 전문의의 정기적인 진찰이 요구되고 있다. 자신의 간질환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 간질환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과로,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관계

계속된 운동이나 작업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피로라 하며, 피로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피로가 겹쳐 축적된 상태를 과로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생물의 항상성(homeostasis)을 방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유해자극에 대한 생물학적 방어반응을 총칭하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는 주관적 측면이 매우 강하여 업무에 대한 숙달정도, 흥미, 기대감, 성취감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개인의 능력이나 성격, 정서상태, 질병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업무상 재해에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함께 업무 연관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상태이나 이를 규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2001년

11월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은 1) 업무일정이나 내용이 자주 변경된 불규칙 근무 2) 충분한 휴식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쾌적성의 제공 여부 3) 출장의 빈도 4) 출장에 지원되는 교통과 숙소의 상황 5) 근무 후 다음 근무시간까지의 휴식시간 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과로나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 발병 전 1개월 동안 1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 2) 발병 전 2~6개월 사이에 한달 평균 80시간을 넘는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로 계측화 하고 있다. 질환 이외의 외부적 요인은 규정화 되고 있으나 기존 간질환 환자의 내부적 요인은 규정되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 평소 음주를 즐기던 외무공무원이 1963년 임용당시 간염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1980년도 건강검진에서 B형 간염(HBsAg)이 음성이었으나, 그 후에 실시된 검사에서 만성 B형 간염이 확인되었다. 1984년 5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단받았고 2개월만에 사망한 고위공직자에게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선고하였다(대법원87누81).
- 1960년경 B형 간염에 이환되어 있던 공무원이 1974년 복막염 수술당시 간경변증이 확인되었고, 1978년 장관재임당시 간세포암으로 진단되어 1979년 10월 사망한 경우에서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선고하였다(대법원85누717).
- 입사 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재직 중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업무상 잣은 음주가 기존질병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간암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선고하였다(대법원 98두12642).

4. 업무수행 중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 간염에 걸렸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거나, 가령 업무와 관련 없이 만성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98두11540).

업무상 질병 판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직장생활 동안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는 것은 근로자나 가족, 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함께 국가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판정을 통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해당 근로자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업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구책이 요구되고 있다.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각종 업무상 질병은 산업의학, 의학, 자연과학, 사회학, 법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관점이 요구되며 이를 객관성 있게 판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다.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권익이 옹호되지 못하면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으로 근무의욕, 성취감, 화합이 저하되고 이는 곧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기업이나 사회가 수긍할 수 없는 판정이 거듭되면 기업은 위축되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불필

요한 소송의 남발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됨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나타나게 된다. 기업으로서는 위험부담율이 높은 근로자를 기피하게 되어 이미 취업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의 기회가 더욱 더 좁아지게 된다. 군복무를 마친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결 론

우리 나라는 간질환 환자들이 매우 많은 나라로서 간질환 환자 또는 바이러스 보유자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직장생활 도중 간질환이 발생된 경우에는 건강한 근로자가 업무에 관련되어 간질환이 발생된 것인지 또는 기존의 간질환이 악화된 것인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사고성 간질환이나 간독성 물질에 의한 간질환과 달리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을 일으키며 의학적 관점에서 자연경과, 악화요인에 대한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업무와 관련성 여부는 사회적, 법적 시각에서 판정되나 현행법은 바이러스성 간질환에 대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객관적 판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뚜렷한 질병인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현행법도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당국, 의료인, 기업인, 법조인, 사회단체 등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